

1.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이 일부개정(2022.11.15.) 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법령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 신청 및 심사 절차 마련(안 제20조의2)
- 소방자동차 관리 및 운용사항 기록·관리 서식을 훈령에 위임(안 별표3)
- 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신설(안 별지25호, 별지2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 ①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별표 3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방자동차: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7조에서 정하고 있

는 기준에 따라 실시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제18조 관련)

1. 정기점검: 소방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가. 소방자동차: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

나. 소방선박: 소방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

다. 소방항공기: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

라. 그 밖의 소방장비

1) 영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일(「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른 교대제 근무의 경우는 교대시마다) 실시

2) 영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외의 소방장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되,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규모를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2. 정밀점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자동차의 특수장치 부분(이하 “특장부분”이라 한다)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서 해당 소방자동차의 취득일(「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을 말한다)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가. 소방펌프차 및 소방화학차

1) 최초 정밀점검: 해당 소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6년 이내

2) 정기 정밀점검: 최초 정밀점검일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나. 소방사다리차

- 1) 최초 정밀점검: 해당 소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6년 이내
 - 2) 정기 정밀점검: 최초 정밀점검일부터 매년 1회 이상
3. 특별점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가. 소방장비의 특수한 결함이나 고장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거나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 나. 해당 소방장비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전국적으로 유사한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다. 그 밖에 소방청장이 특별점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이 결정되었거나 그 밖에 사용하지 않는 소방자동차에 대해서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밀점검을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그 밖에 소방장비의 점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운영예정일	

사무소 소재지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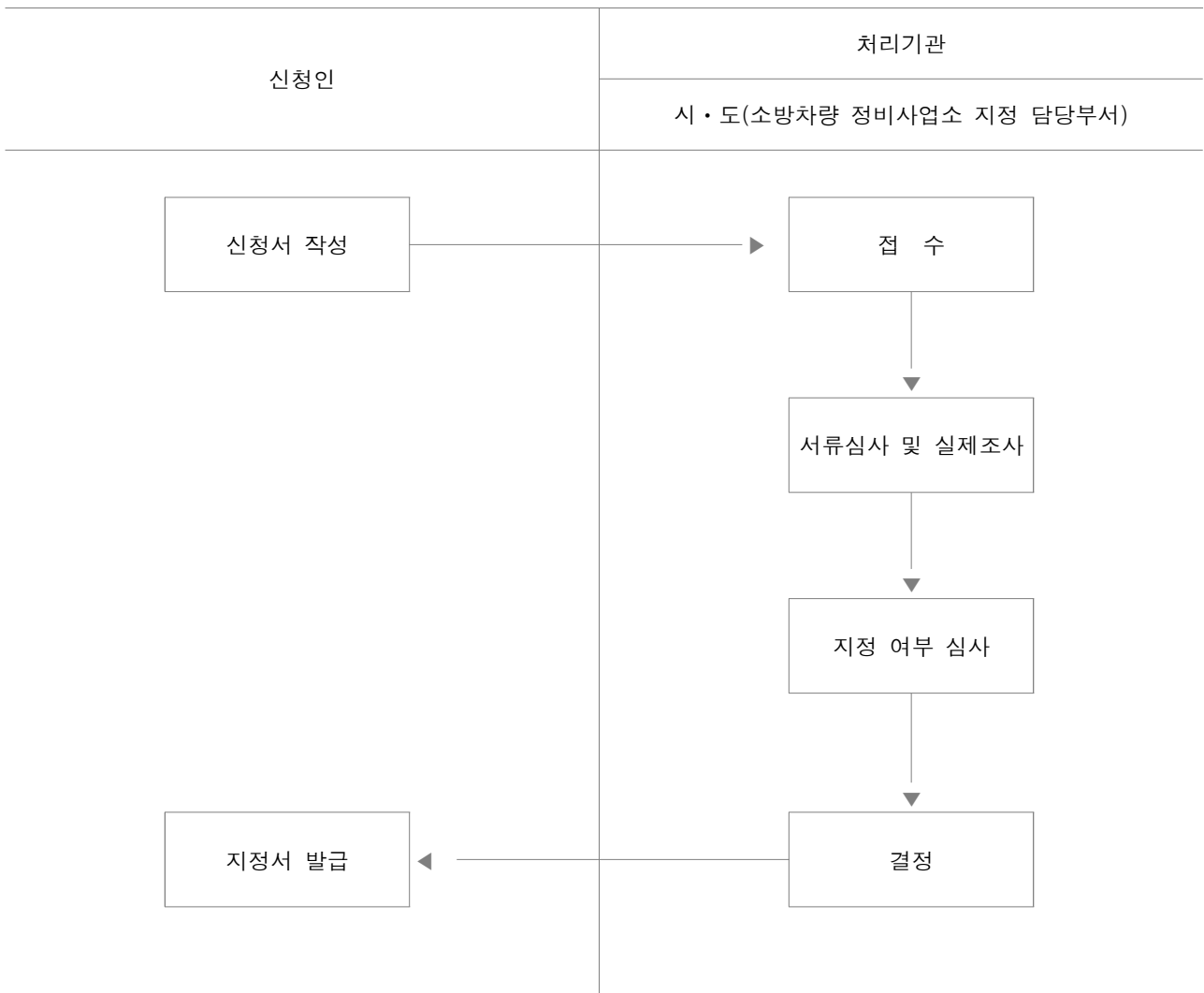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

1. 상호명:
2. 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 소: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위 업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0조의2(소방자동차 정비사업</u> <u>소의 지정) ① 영 제41조제3항</u> <u>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u> <u>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u> <u>5호서식의 소방자동차 정비사</u> <u>업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u> <u>함한다)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u> <u>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u> <u>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u> <u>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u> <u>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u> <u>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u> <u>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u> <u>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u> <u>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u> <u>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u> <u>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u> <u>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u> <u>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u> <u>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u> <u>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u> <u>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u> <u>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u> <u>사해야 한다.</u>

	③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방 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는 별 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	---